2016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
출연 승인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0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 ○ 2016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출연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 제18조」가 개정됨에 따라 「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맞춰 사전에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 ○ 2016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출연금(계획) : 1,291백만원
 - (재)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 조성 : 200백만원
 - (재)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 조성(군금고 협력사업비) : 55백만원
 -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비 : 200백만원
 - 2016년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(26개교) : 836백만원
 · 성주영어체험센터 운영비 : 200백만원
 ·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수업 : 100백만원
 · 중학교 방과후 수업 : 149백만원
 ·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 및 기숙사비 : 387백만원

3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, 「성주군 별고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」, 「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, 〈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〉
 나. 예산조치 : 2016년 인재육성기금 예산 편성(1,291백만원)
 다. 기타사항 : 해당없음